

# 평창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45
----------	-----

제출년월일 : 2001. 12. 14

제 출 자 : 평 창 군 수

## 1. 개정사유

- '99년 전국의 평균 수도요금은 396.9원/톤으로 생산원가 535.3원/톤의 74.1% 수준이나 우리군의 2000년 12월말 현재 상수도 평균단가는 562원/톤으로 생산원가 1,460원 /톤의 39%수준인 것으로 2001. 10월 상수도 자산평가 및 원가산정용역 결과 드러남.
- 따라서 인상요인 160%인 우리군 상수도 요금을 연차적으로 인상하여 환경부 및 행정자치부의 상하수도요금 현실화 방침에 부응하고 지방교부세 삭감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고자 함.
- 수도법 개정에 중수도 설치가 의무조항으로 개정됨에따라 관련 조례정비

## 2. 주요내용

- 상수도 사용요금 평균 30%인상 【안 별표1】
- 지금까지 조정 실적이 전무했던 급수장치손료(계량기 손료)에 대해서도 현실수준에 접근하도록 50%인상 【안 별표2】
- 수도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종류 및 규모의 시설에 중수도 및 빗물이용시설을 설치 사용한자에 대하여 매월 부과되는 수도요금의 20%를 감면해 주는 조항 신설 【안 제37조】

##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첨부
- 신규조문대비표 : 첨부
- 평창군물가대책위원회 심의완료

## 평창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평창군수도급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제1항중 【별표2】를 별지1과 같이 하고, 제32조제2항중 【별표4】를 별지 2와 같이 한다.

제37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군수는 중수도시설 및 빗물이용시설을 설치 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매월 부과되는 수도사용료의 20%를 감면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1

【별표2】

### 업종별 요율표

업종별		월기본료		초과요금		비고
		용량 (단위 : m')	금액 (단위 : 원)	용량 (단위 : m')	금액 (단위 : 원)	
가정용	0 ~ 10	2,750	11 ~ 20	500		
			21 ~ 30	620		
			31 ~ 40	740		
			41 ~ 50	770		
			51 이상	1,150		
업무용	0 ~ 20	14,100	21 ~ 50	1,010		
			51 ~ 100	1,260		
			101 ~ 300	1,450		
			301 이상	1,550		
영업용	0 ~ 30	21,500	31 ~ 50	1,060		
			51 ~ 100	1,310		
			101 이상	1,690		
옥탕용	1종	0 ~ 200	130,900	201 ~ 300	1,400	
				301 ~ 500	1,650	
				501 이상	2,230	
	2종	0 ~ 200	213,750	201 ~ 300	2,250	
				301 ~ 500	3,070	
				501 이상	3,690	
전용공업용		m'당	580			

#별지2

【별표4】

### 급수장치손료

구경별	손료금액(원)	비고
13m/m	510	
20m/m	1,000	
25m/m	1,540	
32m/m	1,840	
40m/m	2,140	
50m/m	3,430	
75m/m	5,700	
100m/m	8,700	
150m/m	15,900	
200m/m	23,850	
250m/m	34,350	
300m/m	37,200	
350m/m	39,600	
400m/m	43,200	

# 신구조문대비표

【안 별표1】

현 행			개 정			
업종별	단계별 (㎡)	요율 (원)	업종별	단계별(㎡)	요율 (원)	비 고
가정용	0~10	2,040	가정용	0~10	2,750	월기본료
	11~20	370		11~20	500	초과요금 (㎡당)
	21~30	460		21~30	620	
	31~40	550		31~40	740	
	41~50	570		41~50	770	
	51이상	850		51이상	1,150	
업무용	0~20	10,850	업무용	0~20	14,100	월기본료
	21~50	780		21~50	1,010	초과요금 (㎡당)
	51~100	970		51~100	1,260	
	101~300	1,120		101~300	1,450	
	301이상	1,190		301이상	1,550	
영업용	0~30	16,540	영업용	0~30	21,500	월기본료
	31~50	820		31~50	1,060	초과요금 (㎡당)
	51~100	1,010		51~100	1,310	
	101이상	1,300		101이상	1,690	
옥탕1종	0~200	100,690	옥탕1종	0~200	130,900	월기본료
	201~300	1,080		201~300	1,400	초과요금 (㎡당)
	301~500	1,270		301~500	1,650	
	501이상	1,720		501이상	2,230	
옥탕2종	0~200	171,000	옥탕2종	0~200	213,750	초과요금 (㎡당)
	201~300	1,800		201~300	2,250	
	301~500	2,460		301~500	3,070	
	501이상	2,950		501이상	3,690	
전용공업용	(㎡당)	450	전용공업용	(㎡당)	580	

## 신구조문 대비표

【안 별표2】

현		개	
구 경 별	손료금액(원)	구 경 별	손료금액(원)
13m/m	340	13m/m	510
20m/m	670	20m/m	1,000
25m/m	1,030	25m/m	1,540
32m/m	1,230	32m/m	1,840
40m/m	1,430	40m/m	2,140
50m/m	2,290	50m/m	3,430
75m/m	3,800	75m/m	5,700
100m/m	5,800	100m/m	8,700
150m/m	10,600	150m/m	15,900
200m/m	15,900	200m/m	23,850
250m/m	22,900	250m/m	34,350
300m/m	24,800	300m/m	37,200
350m/m	26,400	350m/m	39,600
400m/m	28,800	400m/m	43,200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제37조(요금등의 감면) 군수는 모범음식점, 양로원, 보육원, 경로당, 노인회관, 영·유아원, 유치원등 공익상 필요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요금 및 수수료를 감면할수 있다.</u></p>	<p><u>제37조(요금등의감면)①(현행과 같음)</u></p> <p><u>② 군수는 중수도시설 및 빗물이용시설을 설치 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매월 부과되는 수도사용료의 20%를 감면한다.</u></p> <p><u>&lt;신설&gt;</u></p>

# 관 계 법 령 발 취 서

## 수 도 법

### 제23조(공급규정)

일반 수도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도물의 요금, 급수장치에 관한 공사의 비용부담 기타 수도물의 공급 조건에 관한 규정을 정하여 수도물의 공급을 개시하기 전까지 인가관청(광역상수도의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을 말한다)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 얻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수도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제11조(중수도의 설치)

① 물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신축(증축·개축 또는 재축되는 부분이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고자 하는 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사용수량의 10퍼센트 이상을 재이용할 수 있는 중수도를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중수도의 설치결과를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숙박업 또는 목욕장업에 사용되는 시설로서 건축 연면적이 6만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2. 工業配置및工場設立에관한法律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으로서 1일 폐수 배출량이 1천500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3.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종류 및 규모 이상인 시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중수도를 설치한 시설물의 소유자에 대하여 그 중수도의 설치 비용을 지원할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 요금을 경감할 수 있다.

제11조의3(빗물이용시설의 설치) ①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등 지붕면적이 넓은 시설물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물을 신축(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증축·개축 또는 재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자 하는 자는 빗물이용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한 시설물의 소유자에 대하여 그 빗물이용시설의 설치비용을 지원할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요금을 경감할수 있다.



# 수도법시행령

제15조(중수도의 설치대상 등) ①법 제11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종류 및 규모 이상인 시설”이라 함은 건축연면적이 6만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규정에 의한 판매 및 영업시설중 여객자동차 터미널 및 화물터미널, 철도역사, 공항시설, 항만시설 및 종합여객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용시설중 교도소·방송국 및 전신전화국
5. 기타 물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시설

제15조의3(빗물이용시설의 설치대상) ①법 제11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물”이라 함은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1에 의한 운동장 또는 체육관으로서 지붕면적이 2천400제곱미터 이상이고, 관람석 수가 1천400석 이상인 시설물을 말한다.

②법 제11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라 함은 지붕면적이 2천400제곱미터이고 관람석 수가 1천400석인 경우를 말한다.

## 수도법시행규칙

제4조 (중수도설치자에 대한 지원) 지방자치단체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중수도를 설치한 자에 대하여 중수도의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용자하거나 수도요금을 감면할수 있다

우 232-800 강원도 평창군 평장을 마리 210-2 / ☎ (033)330-2431 / 전송 330-2597  
 도시경제과:본정3층 과장:석명준 지역경제팀장:고재용 담당자:장민숙(minsuky777@harmail.net)

문서번호 도경 13600-2461( )  
 시행일자 2001. 11. 8.

(경유)

받 음 도시경제과장  
 참 조 상하수도담당

선결	과장	석명준	지시	
접	일 시간	11.09	결재·공람	
수	번호	8142		
	처리과	도시경제과		<i>(Handwritten Signature)</i>
	담당자	장민숙		
	심사자		심사일	

**제 목 평창군물가대책위원회 개최결과 통보**

평창군물가대책위원회 개최결과를 아래와 같이 통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개최일시 : 2001. 11. 7 (수) 11시
2. 장 소 : 평창군청 2층 소회의실
3. 안 건 : 2002년 상수도요금 30%인상
4. 심의결과 : - 참석대상위원 18명중 15명 참석  
 - 가결 15명, 부결 없음

붙 임 : 심의의결조서 사본 1부. 끝.

*(Handwritten Signature)*  
 원본이요인 지방행정사무장기요

**도 시 경 제 과 장** *(Handwritten Signature)*

# 심 의 의 결 조 서

- 안 건 : 평창군 상수도요금 인상안 심의의결
- 근 거 : 평창군지방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제3조 2항
- 심의내용 : 2002년 상수도요금 30%인상안  
(요금 대비표 붙임)

상기 안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심의의결 합니다.

기 결 ( 15 명)

부 결 ( - 명)

2001년 11월 7일

평창군지방물가대책위원회 위원장 권 역 승

